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수진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8462
----------	-------

발의연월일 : 2026. 4. 21.

발 의 자 : 최수진 · 안철수 · 김 건
박충권 · 신성범 · 김선교
이인선 · 강선영 · 김민전
박준태 · 광규택 · 이상희
의원 (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은 양적으로 성장하였으나, 연구 현장은 여전히 단기 성과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어 신진연구자들이 장기적이고 도전적인 연구 경력을 설계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음.

특히 신진연구자들은 불안정한 지위와 연구 기회 부족으로 인해 성장 잠재력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는 국가 과학기술 경쟁력 저하와 우수 인력의 이탈로 이어질 우려가 있음.

이에 정부가 신진연구자의 창의적·도전적 연구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관련 예산을 확보하도록 책무를 부여하는 한편,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연구개발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할 때 신진연구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을 별도로 기획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신진연구자가 안정적인 환경에서 혁신적인 연구에 도전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10호 및 제9조제4항 신설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최수진위원이 대표발의한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845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9조의4제1항에 따른 이공계 신진연구자(이하 “신진연구자”라 한다)의 창의적·도전적 연구개발을 촉진하고 관련 연구개발예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9조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제3항에”를 “제3항 및 제4항에”로, “기획의”를 “기획 및 별도 기획의”로, “제4항에”를 “제5항에”로 한다.

-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추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신진연구자의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연구 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신진연구자를 대상으로 하는 연구개발사업을 별도로 기획하여야 한다.

제14조제3항 중 “제9조제4항”을 “제9조제5항”으로 한다.

제1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9조제4항”을 “제9조제5항”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정부의 책무) 정부는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1. ~ 9. (생 략) <u><신 설></u>	제5조(정부의 책무) ----- ----- ----- -----. 1. ~ 9. (현행과 같음) 10.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9조의4제1항에 따른 이공계 신진연구자(이하 “신진연구자”라 한다)의 창의적·도전적 연구개발을 촉진하고 관련 연구개발예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9조(예고 및 공모 등) ① ~ ③ (생 략) <u><신 설></u>	제9조(예고 및 공모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추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신진연구자의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연구 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신진연구자를 대상으로 하는 연구개발사업을 별도로 기획하여야 한다.
④ (생 략)	⑤ (현행 제4항과 같음)

⑤ 제1항에 따른 추진계획 등의 예고 절차, 제2항에 따른 수요조사, 제3항에 따른 사전 기획의 세부 내용과 제4항에 따른 공모 및 선정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연구개발과제의 평가 등)

①·② (생략)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9조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공모 외의 방법으로 선정한 연구개발과제나 제21조제2항에 따른 보안과제는 평가단을 구성하지 아니하거나 평가단 구성 시 제2항제1호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 ⑧ (생략)

제16조(연구개발성과의 소유·관리) ①·② (생략)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모 시(제9조제4항 단서에 따른 지정 등 공모 외의 방법인 경우에는 해당 절차

⑥ -----

-----제3항 및 제4항에-----기획 및 별도 기획의-----제5항에

-----.

제14조(연구개발과제의 평가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제9조제5항-----

-----.

④ ~ ⑧ (현행과 같음)

제16조(연구개발성과의 소유·관리)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제9조제5항-----

가 시작되는 시점을 말한다) 연구개발성과의 소유가 국가에 있음을 또는 연구개발성과를 국가의 소유로 할 가능성이 있 음을 미리 공지하는 경우에 한 정하여 연구개발성과를 국가의 소유로 할 수 있다. 1. ~ 4. (생 략) ④ · ⑤ (생 략)	----- ----- ----- ----- ----- ----- -----. 1. ~ 4. (현행과 같음) ④ · ⑤ (현행과 같음)
--	---